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14 선고 2024나1120(본소), 2024나1137(반소) 판결
[공사대금 · 사용승인신청서류 인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14 선고 2024나1120(본소), 2024나1137(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합3039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창호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합30396(본소),
2023가합30402(반소) 판결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7,3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추가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중찬

판사박동욱

판사홍순건

별지